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조치 등 >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444호)

2025.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조치	2
2.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모 확대 등	10
※ 참고자료	15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7. 11.

다. 회 부 일 : 2025. 7.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저작권보호원이 경고, 삭제 등의 시정명령, 시정권고 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러나, 대규모의 조직적인 저작권 침해는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를 통해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사이트를 통해 무단 게시되는 콘텐츠는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공유·확산되는 특징이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가 필수적임.

현재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조치가 유일한 수단이나 저작권 침해 신고 시점부터 접속차단까지 2~3주 소요되어 사실상 접속차단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규모를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 운영하고, 저작권 정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이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6 및 제133조의2 등).

Ⅲ. 검토의견

1.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조치(안 제133조의2, 제133조의3)

가. 개정안 요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되는 경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안 제133조의2).
- 저작권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안 제133조의3).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	① ----- ----- ----- -----

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
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
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
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
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후단 신설>

1.·2. (생략)

<신설>

② ~ ⑧ (생략)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① 보호
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
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
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는 제
1호, 제2호의 조치로는 그 목적
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
하여 명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3.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① ----

-----.

이 경우 제4호의 조치는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권고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제3호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사항

- 최근 방송의 실시간 중계, 다시보기 링크 제공, 유료 웹툰 캡처본 게시 등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가 국내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¹⁾ 및 「방송통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 8. (생략)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

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²⁾에 따른 해당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³⁾가 현행법상 유일한 대응 수단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실제로 접속차단 요구를 하기까지 길게는 약 3주의 기간이 소요되어⁴⁾ 대응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됨.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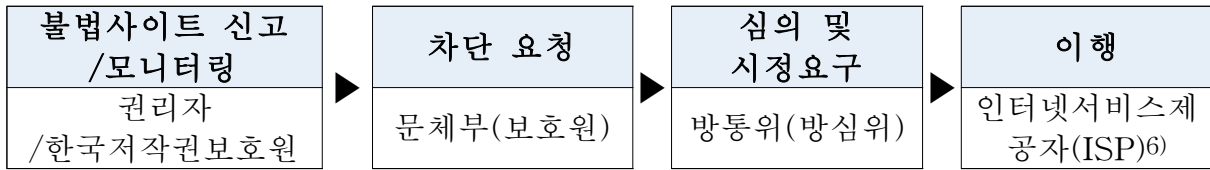
- 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관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 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①법 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 ②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 3) KT, SK, LG 등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가 불법사이트로 연결되는 회선을 차단하는 조치
- 4) <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치 소요기간 >
- ◆ (문체부) 국내 온라인상 침해에 대한 조치(경고·복제·전송자 대상), 삭제·전송중단(불법복제물) 등)
: 안건 접수~조치까지 2~10일 (주 8회, 대면+온라인(서면))
 - ◆ (방심위) 해외 서버 이용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조치
: 안건 접수~조치까지 4~21일 (주 2회, 대면)
-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처리하는 불법 정보의 범위가 아래와 같이 포괄적이고 다양하여 불법복제물에 대한 처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접속차단 활용 기관>

기관명	접속차단 해당 내용
사이버경찰청	안보위해행위, 도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도박, 불법체육진흥투표권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법의약품판매, 불법식품판매 및 허위과대광고, 불법 의료기기판매, 불법마약류판매 등
국민체육진흥공단	불법 승자투표권 구매대행
한국마사회	불법 마권 구매대행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권(위조상품 유통)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유통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유해 정보(사이트)에 대한 차단 안내 페이지(warning.or.kr)

< 불법복제물 접속차단 절차 >



○ 이에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접속차단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해외 서버를 이용한 불법 사이트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고 보임.

- 현행법 제133조의2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물 등이 전송되는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⁷⁾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⁸⁾에 대하여 ①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6개월 이내의 계정 정지, ②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6개월 이내의 게시판 정지만을 명할 수 있으나

6)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는 개인이나 기업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자를 말함.

7) 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제103조의3,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에 따른 심의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원의 원장이 요청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보호원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8)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아래 표와 같이 개정안에 따라 접속차단까지 명할 수 있게 되면 저작권 침해 방지에 관한 권한이 강화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 불법복제물에 대한 단계적 대응 조치 >

1단계	2단계	3단계(개정안)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사이트 접속 차단
불법복제물등의 삭제·전송중단	게시판 서비스 정지	

- 다만, 접속차단의 경우 불법복제물만 차단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이트에 있는 다른 정보들도 접근을 못하게 되어 국민의 정보접근권이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높은 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⁹⁾에 따른 민간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정부 부처 소관 사항을 연계하여 처리하도록 한 현행 제도의 취지는 정부기관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것임¹⁰⁾을 고려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접속차단을 직접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타 부처 소관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보호 업무

9)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

③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경우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10) 오승종, 「해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행정조치 방안 연구」, 한국저작권보호원, 2019

와의 차별성 문제가 제기¹¹⁾될 수 있어 보임.

- 이에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은 보충적, 최후적 수단으로 접속차단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어 해외서버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현재의 법적·기술적 상황에서 유일한 제재수단인 개정안의 접속차단 조치를 취하되, 현행법상의 제재수단인 경고, 삭제 등을 통해 조치가 가능한 국내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¹²⁾ 외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임.¹³⁾¹⁴⁾

○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 서버가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따라 위치별로 대응기관이 상이하여 저작권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권리자의 저작권 보호 요청 수령기관이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분리되어 있어 권리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해외 서버를 이용한 불

11) 제20대국회에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7883호)」의 논의 경과를 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합의제 독립기구로서 통신망에 대한 전반적 관리의 전속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문체부에서 저작물을 보호하려면 모든 부처 소관 사항을 연계해서 처리해 오던 것과 차별성 있는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제364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18.11.12.).

12) 국내에 서버가 있으나 실제 운영자 확인 불가 등 현행법상 행정조치로는 제재할 수 없는 경우 등

13) 다만, 국민들의 정보접근권, 표현의 자유 침해, 과잉금지원칙 위배 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작권보호심의 시 침해 정도에 따른 차등 대응을 위한 심의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기본-현행법상 조치수단 활용) 국내 온라인상 침해에 대해서는 개별 콘텐츠 단위 조치를 원칙으로 하여 게시자 대상 경고, 게시물 삭제·전송중단 적용, 그 외 반복 침해에 대한 계정정지(6개월 이내), 게시판 서비스 정지(6개월 이내) 적용

(예외-접속차단 조치) 해외 서버를 이용한 저작물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시에도 게시물 단위, 일부 게시판, 전체 사이트 차단 순으로 제재의 강도를 높여가는 방법 등 최소침해 방안 강구

14)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립 배경이자 주요 기능인 불법 정보의 ‘내용’에 대한 심의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기구가 담당할 필요성이 있으나 저작권침해의 경우는 저작물의 ‘내용’이 아닌 저작물 유통에 대한 정당한 ‘권리보유 여부’가 심의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저작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보호원)가 조치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는 의견임.

법사이트의 제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한국저작권보호원)이 직접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접속차단 명령(권고)을 가능하게 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 전부수용한다는 의견임.

-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민간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저작권법 위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접속차단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고, 심의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과 심의처리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하여 신속한 심의를 위한 과제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동일한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개정 실익이 없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업무부담 증가, 규제 불균형, 당사자의 권리구제 절차 혼선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기획재정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접속차단 업무를 수행 중이므로 부처 간 업무영역 명확화 및 협의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업무조정 이후 추가적인 안건 증가 등을 토대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인력 증원도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2.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모 확대 등(안 제122조의6 등)

가. 개정안 요지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의 비밀누설금지, 직무 외 용도 사용 금지 의무를 신설하며, 위 의무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22조의6 등).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u>2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보유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u>30명</u> ----- ----- ----- ----- ----- -----.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⑦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u>

⑦ (생략) 제1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략) <신설> ② (생략)	<u>게 된 개인정보 등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137조(벌칙) ① ----- ----- -----. 1. ~ 7. (현행과 같음) 8. <u>제122조의6제7항을 위반한 자</u> ②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¹⁵⁾에 따라 저작권보호원에 저작권 및 문화산업 등의 전문

- 15) 「저작권법」 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제103조의3,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에 따른 심의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원의 원장이 요청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보호원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보유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분야별 권리자 단체 또는 이용자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법학 또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저작권 보호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이용자 보호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를 포함하여 총 20명으로 구성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를 두고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과 권고 조치를 하고 있음.

- 개정안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수를 현행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증원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의 누설이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개정안 제133조의2, 제133조의3에 따라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조치를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수 증가¹⁶⁾에 적절히 대응하고, 심의위원이 심의 시 취득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나 이용자 등의 기업 정보, 민감정보 등을 유출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게 하려는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고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K-콘텐츠의 국내외 확산과 불법유통의 증가로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심의 안건 수가 증가하고 있고, 개

⑤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가 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때에는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⑦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수 등>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년 대비 '24년(%)
심의위원 수(명)	20	20	20	20	20	-
심의 안건 수(건)	174,473	185,858	179,886	256,260	288,573	65.4% 증
시정권고 건수*	694,560	664,400	675,910	818,752	1,040,986	49.9% 증

* 한 사이트에 동일 게시자가 동일 저작물을 여러 번 게시할 경우, 1개 안건으로 통합 심의하므로 심의 안건 수보다 시정권고 건수가 많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건수>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접속차단 건수	7,161	3,517	6,423	7,176	6,593

정안 제133조의2, 제133조의3에 따라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조치 중인 불법복제물 접속차단 권한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부여될 경우 이로 인하여 증가 될 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 수를 고려하면 신속하고 효과적인 심의를 위하여 개정안과 같이 위원 수 증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임.

- 다만 개정안의 심의위원의 직무상 비밀누설 등 금지 의무 규정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개인정보 등의 비밀’은 그 비밀의 범위를 ‘개인정보’로 한정하는 것으로 오해석할 우려와 비밀유지의무와 관련한 유사입법례¹⁷⁾를 고려할 때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심의 참여시 심적 위협이나 부담감으로 작용할 우려와 유사 입법례¹⁸⁾ 등을 고려하여 벌칙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 추가적으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¹⁹⁾에서 비밀누설 등 금

17) <저작권법 및 타법에서의 비밀 유지 의무 규정 현황>

구분	비밀 유지 의무 규정
「저작권법」	제55조의5(비밀유지의무)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직에 재직하는 사람과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② 심의위원, 제22조에 따른 특별위원,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기술자격법」	제25조의2(비밀 엄수의 의무) ① 제23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비밀유지) 조정위원회 분쟁조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건설분쟁조정위원회), 현재 방심위 접속차단 근거법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도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19)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 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행위의 위반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것과 비교하여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불균형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 제출이 있었음.

문 의 처
02)6788-5376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참고1

타 부처 및 유관기관, 협회 등 의견

부처명	의견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 접속차단 업무에 관해서는 방심위에서 既 수행 중이므로 부처 간 업무영역 명확화 및 협의가 우선될 필요 있음 - 업무조정 이후 추가적인 안건 증가 등을 토대로 심의위원회 인력 증원도 결정될 필요 있음
방송통신위원회	-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가 저작권법 위반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접속차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에 동일 규제 신설하는 것은 개정의 실익이 없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업무부담 증가, 규제 불균형, 당사자 권리구제 절차 혼선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 있음 - 방통위는 방심위 서면의결 대상을 저작권 침해 정보까지 확대 하고,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심의처리 시스템을 고도화 하는 등 심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신속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추진 중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59조(금지행위)의 위반에 대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 - 개정안 따를 경우,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 불균형 하게 되어 정보 주체의 권익 보호 약화 우려
법무부	- 심의위원 등이 취급하는 비밀을 보장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 - 형사처벌 여부는 유사입법례 등을 고려, 입법정책적 결정 필요 -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 벌칙 규정 있음을 고려, 처벌 규정 신설의 실익이 불분명한 점도 고려해야 함

협회명	의견 주요내용
게임물관리위원회	해당 개정안은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이 직접 접속차단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을 위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으로 생각됨
만화가협회	웹툰 작가의 창작 의욕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불법 유통사이트는 발견 즉시 신속한 접속차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신속한 접속차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참고2

해외 사례

국가명	내용
영국	•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 - 고등법원은 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통해 제3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금지명령을 내릴 권한을 가짐(제97A조 제1항)
독일	•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법상 책임에 관한 법률 -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 사용 허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자신의 저작물을 차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제7조) * 차단 요청은 법원에 ISP에 청구하며 일반적으로 DNS 차단 기법을 채택
스페인	• 지식재산권법 - 문화체육부 지식재산위원회의 제2분과는 지식재산권자의 요청을 받아 ISP에 접속차단을 요청하며(법 제195조 제3항), 기한 내 처리가 안 될 경우 ISP를 통해 강제 차단할 수 있음(법 제195조 제6항)
중국	• 저작권법 - 각항에 해당하는 권리 침해 행위가 공공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저작권 주무부서는 권리 침해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그 행위자에게 경고를 줄 수 있음(제53조) * 제53조 1항, 3항, 4항, 5항에는 정보 네트워크를 통하여 대중에 중계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저작권 주무부서가 네트워크상의 권리침해 행위를 중지 및 차단할 수 있도록 함